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규정

전문개정 2010. 10. 8. 규칙 제91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법이론과 실제를 연구함과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와 특성화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과 정책에 관한 학제적 연구와 산학간 협력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된 정책을 연구·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3조(업무)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국내·외 학술행사 및 공개강좌 개최
3. 간행물의 발간
4.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학술교류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장 및 부소장) ①연구소에 소장 및 부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관련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소장은 연구소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④부소장은 관련분야를 전공한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의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조직) ①연구소에 비교법연구센터, 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도법연구센터, 국제법무연구센터, 평화·인권연구센터 및 연구지원실을 둔다.

②각 연구센터는 연구계획의 수립 및 연구과제의 수행 등 관계분야의 연구

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연구지원실은 기획·연구업무의 지원, 연구자료의 수집·관리 및 일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연구센터) ①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센터장은 관련분야를 전공한 제주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연구능력이 탁월한 국내·외 인사 중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연구지원실) ①연구지원실에 연구지원실장을 두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연구지원실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8조(조교 및 직원) 연구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연구원) ①연구소의 각 센터에 연구원, 전임연구원과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연구원은 법학관련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장의 명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다.

③전임연구원은 연구소의 업무수행에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국내·외 연구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전임연구원은 유급을 원칙으로 최대 5명까지 둘 수 있다.

④특별연구원은 연구수행상 필요한 경우 연구관련 분야의 국내·외 적격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부소장과 각 연구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 위원은 특성화와 관련된 학내 및 외부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 및 내규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편집위원회) ①연구소는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편집위원회의 운영과 학술지 발간을 위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2조(학술지 발간) ①연구소는 『법과정책』과 『국제법무』 등 2종의 전문학술지를 발간한다.

②학술지는 각 종류별로 매년 2회 이상 발간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 기금, 보조금과 연구용역비,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회계연도는 해당연도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4조(세부사항)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10. 10. 8. 규칙 제91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